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58

발의연월일: 2020. 8. 19.

발 의 자: 박영순·문진석·김용민

이용호 · 문정복 · 이병훈

신정훈ㆍ허 영ㆍ윤재갑

김홍걸 의원(10인)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18. 12.)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제재 강화"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대한 대여・알선을 해 준 사람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의 대여 또는 대여 알선 금지(안 제38조의2, 제112조의2 신설 및 제125조)

누구든지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해주거나 대여를 알선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대여·알선해준 사람에 대한 처분 조항 신설(안 제43조, 제114조)

항공종사자 등의 자격증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및 알선해준 경우해당 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 (안 제125조)

그간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근거 없이 운영하던 초경량비행장 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 련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를 빌려 항공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명서를 빌려주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6의3.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를 빌려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어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 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제1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어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5의3. 제1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어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 거나 다른 사람이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제1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3호의2,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 그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 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조종자 증명을 빌 려 주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조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 초경량비 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조종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134조제24호 중 "제125조제2항"을 "제125조제5항"으로 한다.

제135조제5항제11호 중 "제125조제3항"을 "제125조제6항"으로 한다. 제148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명서를 빌려주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 람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서를 빌려 항공업무를 수행한 사람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제1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람 또는 비행을 하게 한 사람
 - 2. 제112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경량항공기 자격
 증명서를 빌려주어 경량비행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발급받은 경량항공
 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한 사

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제16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 2.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조종자 증명을 빌려주어 초경량비행장 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2(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어 항공업무를 수행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		
	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38조제4		
	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명		
	서를 빌려 항공업무를 수행해		
	<u>서는 아니 된다.</u>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		
	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		
	<u>는 아니 된다.</u>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		
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	명의 취소 등) ①		
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			
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			

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u>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u><신 설></u>

<신 설>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 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명서 를 빌려주어 항공업무를 수행 하게 한 경우

6의3.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외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외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 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 나 다른 사람이 제38조제4 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 7. ~ 31.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증명서를 빌려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7. ~ 3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①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 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 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 거나 그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 어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 이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발급 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서를 빌려 경량항공기 조 종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 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 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 는 아니 된다.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 증명등·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 증명등·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

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신 설>

소 등) ①
<u>제1호, 제5호의2, 제5호의3</u>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12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어
그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어
<u>그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어</u>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
그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어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 하게 한 경우
그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어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5의3. 제112조의2제3항을 위반

6. ~ 17. (생 략) ② ~ ④ (생 략)

증명 등) ① (생 략) <신 설>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 명을 사용하여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 거나 그 자격증명서를 빌 려 주어 경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 위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 하여 경량항공기 조종 업 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 람이 제11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량항공기 조종 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경 량항공기 조종 업무를 하 는 행위
- 6. ~ 17.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 명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 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 행하게 하거나 그 조종자 증명 을 빌려 주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

<신 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u>된다.</u>
④ 누구든지 제2항이나 제3항
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
는 아니 된다.
<u>⑤</u>
<u>제1호·제3호의2·</u>
제3호의3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
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

<신 설>

4. ~ 8. (생략) ③ (생 략) <신 설>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4조(청문) -----

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조 종자 증명을 빌려 주어 초경 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 하게 한 경우

3의3.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 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 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 게 하거나 그 조종자 증명 을 빌려 주어 초경량비행 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 게 하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 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 종자 증명을 빌려 조종 업 무를 수행하는 행위

4. ~ 8. (현행과 같음)

-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 ⑦ 제5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긱	호의	어느	하니	구에	해
당하는	처분을	하려	면	청문	을
하여야	한다.				

- 1. ~ 23. (생략)
- 24. <u>제125조제2항</u>에 따른 초경 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25. (생략)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10. (생략)
 - 11. <u>제125조제3항</u>에 따른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시설의 지정・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12.・13. (생략)

⑥ ~ ⑧ (생 략)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 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
1. ~ 23. (현행과 같음)
24. <u>제125조제5항</u>
25. (현행과 같음)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1. ~ 10. (현행과 같음)
11. <u>제125조제6항</u>
111 1120 100
12.・1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
사 등의 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u><신 설></u>

3. • 4. (생략)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①・② (생 략) 등의 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자또는 비행을 하게 한 자는 1년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 가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
 증명서를 빌려주어 항공업무를
 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 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 나 다른 사람이 제38조제4 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 증명서를 빌려 항공업무를 수행한 사람

<u>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u> 알선한 사람

3. • 4. (현행과 같음)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⑦ (생 략) 용 등의 죄) ①·② (생 략)

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1.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량항공 기를 사용하여 비행을 한 사 람 또는 비행을 하게 한 사람 2. 제112조의2를 위반하여 다음 <u>각 목의 어</u>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 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경 량항공기 자격증명서를 빌 려주어 경량비행기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 하거나 다른 사람이 발급 받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를 빌려 경량항 공기 조종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 용 등의 죄) ①・② (현행과 같 음)
 - ③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 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 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금에 처한다.

- 1. 제122조 또는 제123조를 위
 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
 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비행을 한 사람
- 2.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조종자 증명을 빌려주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람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 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 종자 증명을 빌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업무를 수행한 사람

<u>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u> <u>알선한 사람</u>

④·⑤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